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3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24누445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하승수

충남 홍성군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김명아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7696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6. 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제2목록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27. 피고에게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11. 23.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5. 26. '피고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11. 피고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7.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중 ① '출납공무원'란, ② '카드번호'

란, ④ '승인번호'란, ⑤ '가맹점 상호'란, ⑥ '업종구분'란에 각 기재된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들이 가려진 상태로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을 공개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① '출납공무원'란 부분을 '출납공무원 정보', ② '가맹점 상호'란 부분을 '가맹점 상호 정보', ③ '업종구분'란 부분을 '업종 정보'라 하고, ①, ②, ③ 부분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하며,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청구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카드사 : 비씨은행						
회계	일반회계	출납공무원 : [REDACTED]								
카드번호	청구일자	승인구분	승인번호	목	사용금액		증암계	사용일자	가맹점정보	
					공급기액	부기세	외화사용액		가맹점상호	업종구분
[REDACTED]	2022-01-03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90,910	9,090	0	100,000	2022-01-03	[REDACTED]
[REDACTED]	2022-01-04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06,364	10,636	0	117,000	2022-01-04	[REDACTED]
[REDACTED]	2022-01-05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01,546	10,454	0	115,000	2022-01-05	[REDACTED]
[REDACTED]	2022-01-06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65,455	6,455	0	72,000	2022-01-06	[REDACTED]
[REDACTED]	2022-01-07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52,728	6,272	0	68,000	2022-01-07	[REDACTED]
[REDACTED]	2022-01-10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09,091	10,909	0	120,000	2022-01-10	[REDACTED]
[REDACTED]	2022-01-10	수인	[REDACTED]	업무수지비	68,182	6,818	0	75,000	2022-01-10	[REDACTED]
[REDACTED]	2022-01-11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40,364	4,036	0	44,400	2022-01-11	[REDACTED]
[REDACTED]	2022-01-11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05,455	10,545	0	116,000	2022-01-11	[REDACTED]
[REDACTED]	2022-01-12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38,162	3,818	0	42,000	2022-01-12	[REDACTED]
[REDACTED]	2022-01-13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07,273	10,727	0	118,000	2022-01-13	[REDACTED]
[REDACTED]	2022-01-13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07,273	10,727	0	118,000	2022-01-13	[REDACTED]
[REDACTED]	2022-01-17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74,546	7,456	0	82,000	2022-01-17	[REDACTED]
[REDACTED]	2022-01-17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84,546	8,454	0	93,000	2022-01-17	[REDACTED]
[REDACTED]	2022-01-17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61,819	16,181	0	178,000	2022-01-17	[REDACTED]
[REDACTED]	2022-01-18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74,545	7,455	0	82,000	2022-01-18	[REDACTED]
[REDACTED]	2022-01-18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2,244,000	224,400	0	2,468,400	2022-01-18	[REDACTED]
[REDACTED]	2022-01-19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272,727	27,273	0	300,000	2022-01-19	[REDACTED]
[REDACTED]	2022-01-19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63,637	16,383	0	180,000	2022-01-19	[REDACTED]
[REDACTED]	2022-01-20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43,631	4,363	0	48,000	2022-01-20	[REDACTED]
[REDACTED]	2022-01-20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136,364	13,636	0	150,000	2022-01-20	[REDACTED]
[REDACTED]	2022-01-21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99,000	0	0	99,000	2022-01-21	[REDACTED]
[REDACTED]	2022-01-21	승인	[REDACTED]	업무수지비	68,631	6,063	0	75,500	2022-01-21	[REDACTE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출납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출납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가맹점 상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가맹점 상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종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사업추진비)와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관서업무추진비)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정보 중 출납공무원 정보는 '법무부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과 같이 업무추진비

가 실제로 집행된 부서의 명칭이다(피고 2024. 3. 4. 자 준비서면 11면, 이 법원 제2회 변론조서). 법무부의 각 부서가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 내용이 공유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정보를 통해서는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중 가림 처리된 출납공무원 정보(업무추진비 집행 부서의 명칭), 가맹점 상호 정보, 업종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무부의 다양한 관장 사무와 방대한 사무기구를 감안하더라도 법무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 전부에 대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자들,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이를 보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엿듣기 보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지, 그와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

공개법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는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중 가림 처리된 출납공무원 정보(업무추진비 집행 부서의 명칭), 가맹점 상호 정보, 업종 정보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를 조합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일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각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위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납공무원 정보는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집행된 부서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맹점 상호 정보와 업종 정보 역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 상호 정보, 업종 정보 등을 기초로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 점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의 점주라는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 나) 출납공무원 정보, 업종 정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정보 중 출납공무원 정보, 업종 정보가 가맹점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즉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교적 뚜렷하다.

##### 다) 가맹점 상호 정보에 관한 판단

###### (1)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부구매카드 사용일자, 사용금액(공급가액 + 부가 가치세)의 정보를 부분공개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가림 처리된 출납공무원 정보(업무추진비 집행 부서의 명칭), 업종 정보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가맹점 상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는 경우, 법무부의 특정 부서 공무원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업종(예컨대,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특정 상호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공개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가맹점 상호 정보 전부가 공개된다면, 해당 가맹점으로서는 자신이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일에 법무부의 특정 부서 공무원들에게 음식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과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모두 공개되는 셈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이 타당하다.

## (2)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 특정 가맹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 인한 매출감소의 가능성

가맹점 상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가맹점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가맹점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3. 8. 8. 대통령령 제336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생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이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많은 부서를 두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특정 부서가 민감한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부분공개된 정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된다면,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가맹점에서 결제한 식대 등의 내역 등이 모두 공개되므로, 영세사업자인 해당 가맹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된다거나 해당 가맹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가맹점의 이용을 꺼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해당 가맹점에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면 해당 가맹점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 (나) 특정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 정보 공개 가능성

법무부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는 대지 369,991㎡에 정부청사 5개동, 후생동, 안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무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인지방통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다양한 국가행정기관이 입주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근처 상업지구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해당 상업지구에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 상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각 행정기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도 가맹점 상호 정보를 포함하여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정부과천청사 인근 상업지구에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관련 매출액이 각 일자별, 행정기관별, 집행부서별로 모두 공개되는 결과가 된다. 해당 사업자들의 이러한 매출 관련 정보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정보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가맹점 상호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알 권리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과 비교·형량화더라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3) 가맹점 상호 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가맹점 상호 정보로 인한 해당 가맹점의 이익 침해는 가맹점 상호 정보의 전부 공개로 인한 것이므로, 가맹점 상호의 첫 글자만을 공개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한편으로, 가맹점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맹점 상호 정보 중 ① 가맹점 상호의 첫 글자를 제외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② 가맹점 상호의 첫 글자는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5) 정보공개를 명하는 범위

가)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① 가맹점 상호 정보 중 상호의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② 가맹점 상호 정보 중 상호의 첫 글자, 업종 정보, 출납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면서 가맹점 정보 상호의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부분(① 부분 정보)을 가림 처리하는 방법으로 ②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있다고 인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②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선아                  전자서명완료

**[별지1]**

**제1목록 정보**

원고가 2023. 7. 7. 피고로부터 공개 받은 법무부 전 부서의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중 피고가 정보를 가린 '출납공무원'란, '가맹점 상호'란, '업종구분'란에 기재된 정보. 끝.

**제2목록 정보**

[별지1] 제1목록 기재 정보의 '가맹점 상호'란에 기재된 정보 중 가맹점 상호의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끝.

## [별지2]

### 관계 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3. 8. 8. 대통령령 제336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간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별 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끝.